

(공시보고서 표지 - 공통)

주요 경영상황 공시

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33조제3항에 따라 당사의 주요경영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

2025 년 04 월 11 일

금융투자협회 귀중

회 사 명 :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
(영문명) Woori Asset Trust
(홈페이지) <http://www.wooriat.com>

본 점 소 재 지 :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1, 13층(역삼동, 삼성빌딩)
(전 화) (02) 6202-3000

대 표 이 사 : 김 범 석



담 당 임 원 : (직 책) 경영관리본부장
(성 명) 박 판 수 (전 화) (02) 6202-5155

작 성 자 : (직 책) 사원
(성 명) 전 이 삭 (전 화) (02) 6202-3004

제 출 이 유 : 「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」 제2-59조에 따른 주요 경영상황

※ 본 건 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상황 공시는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33조제3항, 「동법 시행령」 제36조제2항 및 「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」 제2-59조에 따른 『법정공시사항』으로 그 내용에 허위,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449조제1항제15호에 따라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(제6-8-2호)

시공사 또는 위탁자의 은행거래 정지·금지

1. 거래 정지·금지 해당 기관명	대흥건설(주)
2. 거래 정지·금지 일자	2025. 04. 10.
3. 확인일자	2025. 04. 10.
4.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	- 당좌거래정지·금지 은행 : 우리은행 - 당좌거래정지·금지 사유 : 도래어음 미결제 등

<기재상의 주의>

- 주1)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6조1항6호에 따른 신탁업자가 동법 시행령 제36조제2항4호다목에 따라 시공사 또는 위탁자가 은행과의 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것을 확인한 때 공시한다. 다만,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어 은행거래가 정지·금지된 경우에는 당해서식에 따라 공시한다.
- 주2) “거래 정지·금지 해당 기관명”은 은행거래가 정지·금지된 해당 시공사 또는 위탁자를 기재한다.
- 주3) 상기사항 외의 거래정지·금지 은행, 거래정지·금지 사유 등 투자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주요사항을 확인한 경우 “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”란에 가급적 자세하게 기재한다.